

제 정	2021.06.23
개 정	-

ESG 위원회 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장 구 성

제 2 조 (구 성)

제 3 조 (위원의 임기)

제 4 조 (위 원 장)

제 3 장 운 영

제 5 조 (위 원 회)

제 6 조 (소집절차)

제 7 조 (결의방법)

제 8 조 (권 한)

제 9 조 (부의사항)

제 5 장 기타 사항

제 10 조 (간 사)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 12 조 (규정의 개폐)

제 13 조 (적용범위)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정관 제 32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2 조 (구 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제 3 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운 영

제 5 조 (위원회)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안전이 없는 경우 또는 정기위원회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6 조 (소집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권 한)

1.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정책과 ESG와 관련된 윤리경영 및 준법통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심의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9 조 (부의사항)

1. 사내 준법통제활동 실적 검토 및 준법경영정책 심의
2. ESG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
3. ESG 추진과제 이행 현황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기타사항

제 10 조 (간 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3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